

WTO 정부조달협정과 공기업 민영화

Public Enterprise Privatization and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강신원(S.W. Kang)

통신경영연구팀 선임연구원

공기업이 민영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WTO GPA 양허대상에서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WTO GPA 양허목록에서 철회되려면 여타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회원국들로부터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현재 WTO GPA에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영화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으므로 민영화 이후에도 양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요구되나, 이러한 판단 기준은 우리나라 독자적인 힘으로는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 EU 등 민영화 판단 기준에 대한 제안을 WTO에 제출한 회원국들과 협조하여 명확한 공기업 민영화 기준을 설정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민영화된 공기업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 서론

WTO 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정부조달협정)는 세계적으로 공기업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기업의 조달문제를 축소하고 세계 무역을 보다 자유화하기 위한 배경으로 탄생되었다. 동 협정에서는 회원국의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WTO GPA의 양허대상에서 철회할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 WTO GPA 제 24조 6(b)항에서는 “양허대상 기관이 더 이상 정부의 통제와 영향을 받지 않아 그 양허대상 기관을 양허목록에서 철회시키려면 이를 정부조달위원회에 통보하고 회원국들의 반대가 없어야만 양허목록에서 철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1]. 그러나 문제는 어느 정도 정부의 영향을 받아야 “공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을지 또한 민영화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WTO GPA에서의 명

확한 정부조달에 대한 정의, 특히 공기업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정의를 마련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WTO GPA 가입국들은 판단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되었고 민영화 과정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되었고, 민영화 과정에 있다. 민영화된 기업은 WTO GPA로부터 철회되어야 하는데, GPA상의 판단기준 문제 미비로 철회되지 않을 경우, 민간기업이 정부조달협정에 적용 받아 발생할 수 있는 기업경영권 침해 및 조달 효율성의 감소로 근본적 민영화 취지와 역행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WTO GPA 제26조 관련 문제점과 공기업의 민영화 관련 평가기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II. WTO GPA 개요

정부조달이란 정부가 고유의 업무 수행을 위해 소비 및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를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1994년 4월에 WTO GPA에 24번째로 가입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동 협정에 적용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42개 중앙정부기관, 서울시, 5개 광역시를 비롯한 15개 지방정부기관, 그리고 한국전력, KT, 주택공사를 비롯한 23개 정부기관을 양허하였다. 현재 WTO GPA 가입국 현황은 2002년 11월 현재 29개국에 이르고 있다.¹⁾

정부조달협정의 문제점에 관련하여 모든 가입국들은 GPA의 협상을 완료하면서도 GPA에 아직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엄격한 부문별 상호호혜주의의 적용으로 인한 시장개방의 미흡, 양허하한선으로 인한 시장개방의 미흡, 불확실한 기술규격관련 규정, 소극적인 협정의 이행과 감시, 공기업 포함여부와 민영화에 대한 규정의 미비, 응찰기업들간 담합 가능성에 대한 제재수단의 미비, 가입국을 확대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결여 등이 거론되었다[3].

현재 WTO에서는 정부 조달과 관련하여 3개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기 설정 의제인 GATS의 규범에 대한 협상 중 일부로서 서비스정부조달 개방에 대한 논의이다. 둘째는 정부조달협정 자체에 대한 개정논의이다. GPA 개정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97년부터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을 이루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주요이슈로는 정보기술을 GPA에 반영, GPA의 조달형태를 재분류하고 조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 GPA에서는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정부의 영향력이 제거될 경우 GPA의 적용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 마련(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경우의 대응방향), GPA 제5조에서는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이익을 배려하는 각종 특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는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에 관한 논의이다.

III. WTO GPA의 문제점

1. 공기업과 민영화

정부조달협정이 WTO에서 논의된 이유 중의 하나가 공기업의 확산에서 비롯되었듯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체결된 GPA에서는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 정부기관도 GPA의 대상이 되었다(<표 1> 참조).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어느 정도 정부의 영향을 받아야 공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며, 여기서 공기업이 민영화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된다[4].

WTO GPA 제24조에서는 양허대상 기관이 더 이상 정부의 통제와 영향을 받지 않아 그 양허대상 기관을 양허목록에서 제외시키려면 이를 정부조달위원회에 통보하고 회원국들의 반대가 없어야만 양허목록에서 철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양허대상 기관이 민영화 되었어도 여타 가입국들이 그 양허대상 기관을 양허목록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면 분쟁해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이 문제가 특히 심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WTO GPA 양허기관인 KT, 한국전력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대규모 공기업들이 현재 민영화되었거나 진행중에 있다. 조달규모가 큰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GPA의 양허대상 목록에서 철회를 추진한다면 다른 회원국들의 반응은 부정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조달에 대한 정의, 특히 공기업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 Austria, Belgium, Canada, Denmark, European Communities,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ong Kong, China,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Lichtenstein, Luxemburg, Netherlands, Netherlands with respect to Aruba, Norway, Portugal, Singapore, Spain,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2]

<표 1> 도쿄라운드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협상된 정부조달협정 비교

	도쿄라운드 GPA	우루과이라운드 GPA
가입국	• 22개국 - EC, EC 10개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홍콩,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이스라엘	• 27개국 - EU, EU 15개국, 캐나다, 홍콩, 이스라엘,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한국, 리히텐슈타인, 네델란드령 아루바제도(신규가입국)
적용대상	• 중앙정부의 물품조달	• 중앙정부, 지방정부, 양허안 이부 공기업의 물품, 서비스, 건설서비스 조달
적용범위	• 조달로 한정	• 구매, 리스, 임차, 할부까지 적용
입찰마감	• 공개입찰은 30일, 선택입찰에서 입찰참가신청서 30일 보장	• 공개입찰은 40일로 연장, 선택입찰에서 입찰참가신청서는 25일로 축소 •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 입찰보장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 최소 10일 보장
오프셋	• 억제 권장	• 금지
분쟁해결	• 공급업체가 가입국의 정부조달 절차와 GPA 합치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의절차를 마련	• 추가적으로 공급업체가 협정을 위반하는 조달기관에 대해서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회원국은 이를 위한 법률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민영화	• 명시하지 않음	•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정부의 영향력이 제거되는 경우 GPA 적용대상에서 배제됨

<자료>: 양준석 외, 2001, p. 41[4].

일어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정의를 마련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가입국들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등 일부국가들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²⁾ 따라서 현재 WTO GPA 규정에 따라 공기업이 완전히 민영화되어 정부의 영향력이 제거된 경우에도, 일부 가입국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민영화된 공기업을 GPA 양허기관 목록에서 철회시키지 못하고 있다.

2. 민영화의 목적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정부소유의 기업 또는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기업(State-Owned Enterprise: SOE)의 통제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민영화란 통제권이 정부에서 민간 경영자에

게 재분배되는 것과 민간 투자자의 현금흐름에 대한 소유권이 증진되는 것의 결합으로 정의된다. 또한 민영화는 정부가 자산소유권과 상업적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민간부문에 이전시키는 절차로 보기도 한다[5].

여기서 정부소유기업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민영화의 의미도 차이가 있다. 즉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관련기관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거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덴마크와 멕시코 등은 정부지분이 50% 이상인 경우 이를 정부소유기업이라고 정의한다. 그밖에도 정부가 이사회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이사장을 선임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정부소유기업으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절차로 이해되고 있지만 좀더 넓은 의미로 경영권의 이양이나 정부 또는 공공부문의 경영 간섭 배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각국 정부가 민영화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은 각국의 정치·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민영화의 목적은 각기 다르고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간여축소, 민영화된 산업의 효율성 향상, 공공

2) 대부분의 가입국들은 공기업의 정의가 만들어지는 경우, 현재 GPA 적용대상이 아닌 공기업들을 GPA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공기업들이 일방적으로 GPA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일부 기업들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가입국간의 양허목록에 대한 균형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가입국들은 정부조달의 정의와 공기업의 정의에 대한 논의를 반대하거나 기피하고 있다.

부문 차입규모 축소, 공공부문 노조 약화 및 보수문제 조정, 주식소유 확산, 종업원의 주식보유 촉진, 그리고 정치적 우위 차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대표적인 통신사업자인 KT 민영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실질적인 민간이양을 통하여 KT 경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의 제고로 요약될 수 있다[6]. 즉, 공기업 구조에서 유래하는 관료적 문화, 방만한 인력, 조직구조 등의 비효율성을 민영화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것이다. 즉, 민영화를 통하여 공기업적 비효율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이윤동기에 입각한 민간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적인 통신사업자로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3. 조달협정의 영향

조달협정이 사업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외국의 저가 우수장비 도입기회 발생, 국내 공급자간 기술과 원가우위의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 선진 우수 통신장비 도입을 통한 첨단 통신기술 습득, 구매의 투명성 확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용이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통신시장의 경쟁현황과 장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³⁾

가. 긍정적 영향

조달협정을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는 첫째, 품질이 우수한 통신장비의 저가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공개입찰의 장점을 살려 모든 경쟁 있는 장비제조업체들에게 경쟁입찰을 실시함으로써 과거보다는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한 통신장비를 조달할 수 있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조성이 된다. 무차별적 경쟁조달은 국내 공급자간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품질경쟁 및 가격경쟁 유발을 촉진하여, 국내 공급자의 통신장비에 대한 기술발전 및 한국통신의 통신망 효율성 제고를 기할 수 있다. 셋째, 선진 우수장비도입을 통한 통신기술 습득이 가능하다. 우수장비도입은 통신망 운용, 유지보수, 개량 및 개선 등 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대시켜 궁극적으로 유지보수 비용 및 통신품질을 향상시켜 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7].

나. 부정적 영향⁴⁾

민영화된 공기업이 WTO GPA를 준수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경영의 자율성 저하 및 초과비용 발생 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현상일 것이다. 첫째, 경영자율성이 침해된다. 조달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기간 조달문제를 정무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게 됨으로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해결이 어려우며, 관련 사업의 일시적 중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초래됨으로써 자율적인 경영이 저해될 수 있다. 둘째, 경영정보 누출이 일어날 수 있다. 국제조달 시 사전 정보제공 준수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보의 누설로 인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협정 준수에 따른 경영자율성의 약화는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경쟁력 약화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달기간이 길어져 조달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⁵⁾ 조달목적은 저가의 우수제품을 신속

3) 1999년 KIEP는 기업들의 사례연구를 통해 정부조달협정의 가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GPA가 한국기업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정부조달의 부정적 영향으로 조달협정 배제를 요구한 몇몇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영국의 BT는 1992년 공공조달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조달과정에서 초과비용이 들었으며, 조달계획 발표에 따른 영업비밀 누설 등 경쟁기업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을 당했으므로 그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영국정부를 상대로 유럽사법법원에 제소하였다. 일본 NTT의 경우도 조달협정으로 인하여 경영의 자율성의 침해와 타 경쟁사와 경쟁에서의 불이익을 들어 조달협정에서 배제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한국의 KT도 경영자율성 침해와 조달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초과비용 발생을 들어 협정 배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5) 강신원(2002)은 조달협정에 따른 KT의 조달비용 상승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KT는 경쟁조달액의 16~17% 정도의 추가조달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KT의

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것인데, 조달기간의 장기화 및 이에 따른 조달비용의 증가는 각종 통신서비스의 원가에 반영됨으로써 통신사업 운영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7].

4. WTO GPA 운영의 모순

우리나라는 WTO GPA에 가입할 당시, 정부의 지분이 50% 이상이 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을 GPA 적용대상으로 양허하였다. 그러나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지분비율이 감소되었으며 여러 공기업들이 정부의 지분이 없는 완전 민간기업 상태이나 아직도 GPA 적용대상에서 철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WTO GPA에서 민영화된 공기업이 양허목록에서 철회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명확하게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를 이용하기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현재 WTO GPA 운영에 다소 모순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GPA의 기본 목표는 시장개방과 자유화, 그리고 효율성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해 기업을 운영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기업은 국내외 공급업체를 막론하고 가장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을 보장하는 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므로 시장개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GPA는 민영화를 권장하고, 민영화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GPA에서는 상호호혜주의의 원칙과 양허목록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민영화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초가조달비용은 2000년 약 1,570억 원과 2001년 1,684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직접조달 추가비용으로 2000년, 2001년 각각 1,221억 원과 1,209억 원이, 간접조달 추가비용은 349억 원과 474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하였다[7].

IV. 공기업 민영화의 판단 기준

1997년에 발효된 WTO GPA에서는 공기업이 GPA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고, 또한 정부의 영향력이 제거될 경우 민영화된 공기업은 GPA의 적용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정부의 영향력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조달과 공기업의 정의를 마련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가입국들은 이러한 정의를 GPA에서 규정하는 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도 정부조달의 정의를 마련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지만, 공기업이 포함되는 경우 각 국가마다 공기업의 역할과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공기업을 포함하는 정부조달의 정의를 찾는 데 실패하였다.

또한 대부분 가입국들은 공기업의 정의가 만들어지는 경우, 현재 GPA 적용대상이 아닌 공기업들을 GPA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공기업의 정의에 입각하여 현재 GPA 적용대상이 아닌 공기업이 GPA에 포함시켜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면에 현재 GPA에 적용 받는 공기업이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입국간 양허목록에 대한 균형이 깨어질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에 입각하여 가입국들은 정부조달 정의와 공기업 정의에 대한 논의를 반대하거나 기피하고 있다.

1. WTO

GATT 정부조달협정은 민영화와 관련한 적용범주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료하게 공기업 또는 국영기업들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⁶⁾ 부연하면, 조달

6) Article I: 1(c)

(c) procurement by the entities the direct or substantial control of Parties and other designated entities, with respect to their procurement procedures and practices. Until the review and further negotiations referred to in the Final Provisions, the coverage of this

절차 및 이의 시행과 관련하여, 회원국 정부의 직접적 또는 실질적인 통제 하에 있는 기관들에 의한 조달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부에 의한 통제라는 요소를 명시적으로 협정 적용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정부의 통제요소에 대해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대상기관의 업무영역에 대해서가 아니라 조달절차 및 이의 시행이라는 조달문제에 국한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WTO GPA에서의 포괄적인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근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도쿄라운드 이후의 GATT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그 예가 1988년 12월 23일 정부조달위원회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는 비공식작업반에서의 논의를 통해 조달정책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거나, 정부에 의존하거나, 정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기관들에 대하여서는 GATT 정부조달협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합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⁷⁾ 이러한 자료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부의 영향이라는 부분은 조달정책이라는 구체적인 영역과 관련하여서만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GATT GPA 제9조 5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소한 수정 이외의 양허기관에 대한 수정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별

도의 각주해석 등은 없으나, 민영화에 따른 법적 지위 변화는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이해될 수 있다.⁸⁾ 위의 제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공공기관의 지배적인 영향력과 관련한 규정은 이후 EU의 공공지침에 동일한 형태로 반영되고 있다.

2. 미국

WTO에서는 민영화와 관련하여 양허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논의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는데, 이러한 논의에서 미국의 입장은 WTO 정부조달협정 양허대상의 배제는 정부의 통제나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배제됨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영향력 배제는 단순히 형식적(formal)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효과적(effective)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0]. 한편 미국은 정부의 효과적인 영향력 배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양허대상과 정부와의 연계 존재 여부, 정부의 직·간접적인 소유관계 여부, 주주 구성, 정부지원 또는 보조 여부, 정부의 사업결정에 대한 형식적 또는 비형식적 감독 관리 여부, 정부와의 인력교류 여부, 양허대상 업체의 상품 및 서비스 경쟁시장 관련 정도, 그리고 정부에 의한 법적 또는 특별한 혜택부여 존재 등 아주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표 2> 참조).

3. EU

EU가 WTO에서 주장한 정부조달 관련 정부의 영향력 배제를 위한 평가기준으로서의 유효경쟁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조달주체의 실질적 운영이 민간분야로 이전되었거나, 실질 시장경쟁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경우에 조달주체로부터 정부의 통제나 영향력이 제거되었다고 간주하며, 이러한 경우 조달주체(공기업)를 GPA 양허대상 목록으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다.” 그러나 EU

Agreement is specified by the lists of entities, and to the extent that rectifications or amendments may have been made, their successor entities, in Annex I.

7) This was the reason why (the Japanese) Government had asked the Committee to examine it, taking the account of the following two element: (i) the general consensus that had been reached in the Informal Working Group that entities whose policies are not controlled by, dependent in, or influenced by, the government shall not be made subject to the Agreement but that the government should refrain from interference in their transactions, including their procurement activities; and (ii) the fact that Japan had already subjected all central government entities to the Agreement; it was therefore not in a position to subject further entities to it unless the negotiations on broadening under Article IX:6(b) were successful[8].

8) 동 조항의 개정에 대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될 당시 민영화에 따른 협정 적용기관의 철회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표 2> 미국의 공기업 민영화 판단기준

	기준	비고
1	Whether there is a legal nexus or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entity	사업자와 정부의 법적 관계
2	Whether the government holds a direct or indirect controlling interest in the entity's capital nor voting rights	정부의 직·간접적 사업자 지분현황
3	Whether the government appoint more than half of the members of the entity's managing board or such other number as would have the power to decide on operations	정부의 경영자 선임 정도
4	Whether the government provides support to or subsidizes the entity, and, if so, whether such support represents a one-time public investment or a continuous operation subsidy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보조의 정도
5	Whether the government exercises formal or informal oversight or supervision of an entity business decisions, beyond the normal regulatory oversight for all suppliers in a particular industry	사업자의 사업결정에 대한 정부의 공식, 비공식적 감독 여부
6	Whether there are any personnel linkages between the entity and the government	정부와 사업자와의 인력교부 여부
7	Whether the entity is exclusively engaged in the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in commercial markets subject to genuine competition, or whether it has mixed governmental and commercial functions; and	사업자가 완전한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가 여부
8	Whether the government has granted special or exclusive legal or economic rights or benefits that may alter the competitiveness of an entity goods or services in a commercial market or otherwise influence the entity business decisions	정부의 사업자에 대한 법적, 경제적 권리나 특혜 부여 여부

<자료>: WTO GPA Revision, Interim Draft, July 23, 2003.

의 이러한 제안은 구체적인 기준보다는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1].⁹⁾

EU의 유효경쟁에 대한 개념은 EU의 공공조달지침과 EU 사법법원(ECJ)의 판결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다. EU 공공조달지침(93/38/EEC) 제8조에서는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경쟁 하에(즉, 유효경쟁) 있는 통신사업자들에 의해 체결되는 구매 계약은 공공조달절차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12]. 따라서 EU는 유효경쟁 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쟁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면 EU의 공공조

달지침을 배제함으로써 유효경쟁이 충족된 사업자는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자재를 구매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EU의 유효경쟁의 개념과 평가기준은 영국 BT가 유럽사법법원에 영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에서 찾아볼 수 있다[13]. 유럽사법법원은 EU 공공조달지침(93/38/EEC) 제8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효과적인 경쟁 하에 있는 통신사업자들에 의해 체결되는 구매 계약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14]. “완전하고 효과적인 경쟁의 존재를 위해서는 법적 제약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쟁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서비스의 적용배제 결정은 개별적으로 동 서비스의 제반 특성, 대체서비스의 존재여부, 가격요인, 시장에서의 계약 기관의 지위(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법적 제약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EU의 유효경쟁은 아주 포괄적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U가 매년 발간하는 회원국의 통신부문 경쟁상황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통신부문에서의

9) EU 관련 조항 제1조 2에서 정의된 공공사업체란 “정부가 소유권이나 재정적 참여 또는 관련법규 등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체이며 지배적 영향이란 사업체의 출자자본이 과반수를 소유, 사업체가 발행하는 주식에 부수된 의결권의 과반수를 통제, 그리고 사업체의 집행·관리·감독위원회 임원의 과반수 임명권을 보유하는 사업체”로 명기하고 있다. 제8조 1에서는 “계약기관이 하나 이상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다른 기관이 동일 지역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자유로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유효경쟁이 있는 경우 조달협정 양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유효경쟁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12]. EU의 경쟁상황 평가는 Direct General Competition(DG Competition)에서 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으로는 시장경쟁현황과 시장자유화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시장경쟁현황은 통신사업자 수, 시장점유율 등 시장경쟁 현황이다. 시장자유화 정도는 규제기관 독립성, 사업허가 공정성 및 비차별성, 상호접속의 비차별성과 공정성 및 회계방식, 시내망세 분화, 보편적서비스, 요금, 원가산정, 사전선택제, 번호이동성, 공도이용권, 이동통신서비스, 전용회선, 데이터 보호, 인터넷 등 포괄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

4. 일본

가. 일본의 제안: 민영화된 공기업의 GPA에서 철회를 위한 구체적 기준

일본의 경우 NTT의 민영화로 분사된 NTT Communications Corporation을 GPA 대상목록에서 철회시키지 못하자, 정부조달위원회에서 공기업을 GPA 양허목록으로부터 철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일본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그 기업에 특별하고 예외적인 운영권이나 특별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2) 정부는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 이사 중 절반 이하만을 지명할 수 있다. 3) 기업은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며 정부의 보조금이나 자금지원을 받지 않는다[15].

이러한 일본의 제안에 대하여 각국은 다음과 같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 정부가 이사회 이사 중 절반만을 지명할 수 있다고 하여도 정부가 이사회에서 과반수에 가까운 비중의 이사를 지명할 수 있는데, 그 기업이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2) GPA 양허목록은 각 가입국간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목록이므로 하나의 공기업이 목록으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으며 가입국의 양허목록간 균형이 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가입국간 상호협상이 꼭 필요하다. 3) 운영권이나 특별권

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 4) 미국의 경우 일부 공기업은 자체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기업으로 간주되고 있어, 자체수익에 대한 조건은 부적합할 수 있다. 5) 범국민적 서비스 공급이나, 생활필수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위해 정부는 민간기업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 보조금에 대한 조건은 부적합할 수 있다.

나. 일본의 새로운 제안(WTO GPA Job No. 7823, 2002. 10. 4.)

1) GPA 규정상의 이슈(Substantive Issues)

일본은 WTO GPA 24조 6항(b)의 의미와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떤 국가가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양허목록에서의 양허대상 철회 등 GPA 개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와 이의제기의 법적인 효과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표 2>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16].

2) 절차상의 이슈(Procedural Issues)

일정한 시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가 확실한 이의의 이유제시, 양허목록 수정안을 제출한 국가와 이해당사국간이 의견교환 시 시간설정 문제와 양허목록 수정안을 제출한 국가와 이해당사국간이 의견교환 시 주도해야 할 국가 등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표 3>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16].¹⁰⁾

이러한 일본의 제안에 대하여 각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중재 구성방법 및 결정시한의 설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 2) 민영화

10) 일본은 회원국(수정회원국, Modifying Parties)과 영향을 받는 회원국(Objecting Parties)간의 협의 기간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먼저 총 120일을 이의제기 및 협의 기간으로 제안하였으며, 총 120일 중 30일은 이의제기 기간, 90일은 협의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수정회원국이 답변을 준비하고 응답하는 데 보통 30일 이상이 소요되고 이러한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 차례 계속되기 때문에 120일이 너무 짧음을 지적 받아 210일로 수정 제안하였다. 총 210일 중 30일은 이의제기 기간, 180일은 협의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일본의 WTO GPA 제24조 6항 수정안(공기업 민영화관련 6개 조건(WTO GPA Job No. 7823))

WTO GPA 제24조 6항 내용	일본의 수정안
<p>(a) 본 협정 부속서 I-IV에 대한 정정, Annex간의 기관이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기타 수정은 본 협정에서의 상호합의된 적용범위의 변화를 가져올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정보와 함께 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만약 정정 이동 또는 기타 개정이 순수하게 형식상의 것이거나 사소한 성격의 것이라면, 30일 내에 반대가 없는 경우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 이와 다른 경우, 위원회 의장은 신속히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 및 상기 통보 전 본 협정에서 상호합의된 적용범위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보상조치에 대한 제안과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동 사안은 본 협정 제22조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p>	<p>(a) (i) 본 협정 부속서 I-IV에 대한 정정, Annex간의 기관이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기타 수정은, 본 협정에서의 상호합의된 적용 범위의 변화를 가져올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정보와 함께 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만약 정정 이동 또는 기타 개정이 순수하게 형식상의 것이거나 사소한 성격의 것이라면, 30일 이내에 반대[수정안(Proposed Modification)에 의한 모든 “영향을 받는 회원국(Affected Party)에 의한 이의(Objection) 제기]가 없는 [모든 “영향을 받는 회원국(Affected Party)에 의한] 경우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 이와 다른 경우, 위원회 의장은 신속히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 및 상기 통보 전 본 협정에서 상호합의된 적용범위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보상조치에 대한 제안과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동 사안은 본 협정 제22조[또는 중재(Arbitration)]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처리[모든 “영향을 받는 회원국에 의한]된다. (ii) 수정안에 대하여 모든 “영향을 받는 회원국”들이 120일 또는 210일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며, 수정안은 효력이 발생된다. 이러한 기간은 상호협정의(Mutual Agreement)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p>
<p>(b) 회원국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당해 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어떤 기관을 본 협정 Annex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수정은 상기 통보 후 30일 경과 후 위원회의 후속회의(following meeting)가 개최되어 여기에서 반대가 없는 경우 후속회의 종료 익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반대가 있을 경우, 동 사안은 본 협정 제22조의 협의 및 분쟁해결의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제안된 Annex의 수정 및 이에 따른 보상조치방안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정부의 통제나 영향력이 제거됨에 따른 시장개방 효과가 잠작되어야 한다.</p>	<p>(b) (i) 회원국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당해 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제거[수정회원국(Modifying Party)]되었다는 이유로 어떤 기관을 본 협정 Annex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수정은, 상기 통보 후 30일 경과 후 위원회의 후속회의가 개최되어 여기에서 반대가 없는 경우 후속회의 종료 익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여기서 회원국(Affected Party)은 수정안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회원국]. (ii) 통보(Notification)는 아래의 기준에 의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정부는 그 기업의 대부분의 자본(Capital)과 투표권(Voting Rights)을 통제(Control)하지 않는다. - 정부는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의 이사(Managing Board) 중 절반 이상 지명하지 않는다. - 기업은 정부의 보조가 아닌 사업수익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기업의 조달에 있어서 정부의 통제나 영향력이 없어야 된다. - 정부는 그 기업에 특별하고 예외적인 특별권리(Any Special or Exclusive Rights)를 부여하지 않는다. - 그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장에 하나 이상의 기업이 존재해야 한다. (iii) 반대가 있을 경우[수정회원국은 모든 “영향을 받는 회원국”과 협의(Consultation)를 시작해야 한다. 만일 120일 또는 210일 동안 합의(Agreement)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 사안은 본 협정 제22조[중재, 수정안에 대한 회원국(Affected Party)들의 이의제기의 원인이 포함된 서면으로]의 협의 및 분쟁해결의 절차에 따라 처리[모든 “영향을 받는 회원국”에 의한]될 수 있다. 제안된 Annex의 수정 및 이에 따른 보상조치방안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정부의 통제나 영향력이 제거됨에 따른 시장개방 효과가 잠작되어야 한다. (iv) 수정안에 대하여 모든 “영향을 받는 회원국”들이 120일 또는 210일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며, 수정안은 효력이 발생된다. 이러한 기간은 상호협정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v) 만일 수정회원국이 수정안을 철회하고 중재판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재에 참여한 모든 영향을 받는 회원국은 그 판정에 따라 부속서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혜택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제III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정 또는 철회는 오직 수정회원국에 대해서만 이행될 수 있다.</p> <p>(c) 정부조달위원회는 부속서의 정정 또는 수정절차를 마련한다.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부속서의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한 모든 회원국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자국의 부속서를 수정한다.</p>

<자료>: WTO, Draft Text for Possible Revised Provisions Relating to Basket 3 Issues(ART. XXIV:6), 2003. 4. 22[16].

판단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필요하다. 3) 캐나다, 미국 및 EU 등은 민영화의 기준으로서 단순 과반수 정부지분만으로 정부 영향력의 배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4) 양허목록 수정과 관련한 회원국간 분쟁이 불합리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시한 및 절차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5) 반대입장을 제기할 수 있는 회원국을 이해당사국으로 한정할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6) 중재에 관련하여, 분쟁해결절차와 중재가 양자선택 사항인지, 아니면 중재를 거쳐 분쟁해결로 가는 것인지 불분명하며, 중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다시 위원회에서 결정할 경우,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리 협정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사항임이 지적되었다.

5. 우리나라 제안

WTO GPA 협정 개정과 관련한 이슈 중 특히 민영화 정의에 관련하여 이견이 많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지배 또는 영향력이 완전히 제거된 대상기업에 대하여 일정 협의기간 경과 후 자동 제외절차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15],[17].

이러한 우리나라의 제안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일정시한이 지나면 자동발효 되도록 한 것은 WTO GPA 24.6(b)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효될 가능성이 있으며,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반대국가들이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즉, 우리나라 제안서의 주요내용인 일정시한 경과시 자동발효 조항은 절차를 단순 명료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회원국들이 충분히 정부의 지배 또는 영향력 배제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제한한다는 측면이 있다.

V. 결론

민영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WTO GPA 양허대상에서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

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양허목록에서 삭제 되려면 여타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회원국들로부터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WTO에는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공기업이 민영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영화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민영화 이후에도 양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영화에 대한 기준이 요구되며, 이러한 기준은 우리나라 독자적인 힘으로는 세울 수 없으므로 일본, EU 등 민영화 기준에 대한 제안을 WTO에 제출한 회원국들과 협조하여 민영화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영화된 기업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WTO에 일본의 기존 제안을 보완하여 제안을 한다면 WTO GPA 개정 관련 논의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일본은 자국이 제안한 논의를 재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제안을 크게 환영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안을 고려하여 제안 또는 다른 나라 제안의 개진을 통하여 민영화 기준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정부조달협정의 문제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정부조달협정의 본질적 목적과 현재 GPA의 운영의 문제점,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민영화된 기업의 WTO GPA 적용에 따른 비효율 및 경영권 침해 문제 등을 부각시켜 민영화된 기업의 WTO GPA 철회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둘째, 민영화 기준설정에 따른 다른 회원국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민영화의 기준이 설정되면 기존의 양허목록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롭게 양허대상으로 포함되는 공기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회원국들은 이렇게 자국의 공기업이 새롭게 양허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기준은 기존에 양허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양허대상으로 한정하는 방법(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정확한 기준설정이 요구된다. 현재 WTO GPA상에서는 민영화된 공

업이 적용배제에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 EU와 일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판단기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EU안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주장을 옹호하고 주요국의 논의의 추세에 따라 새로운 절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협의의 민영화 기준이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제24조 6(b)조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양허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영향의 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동 조항은 정부영향의 실질적인 제거를 규정함으로써 법적(de jure)인 영향뿐만 아니라 사실상(de facto)의 개입으로 간주되는 모든 영향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민영화의 기준의 포괄적 해석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처음 공기업이 문제가 되고 GATT 정부조달협정이 의도했던 민영화에 대한 해석을 이해하고 협상자료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GATT 정부조달협정은 민영화와 관련한 적용범주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료하게 공기업 또는 국영기업들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달절차 및 이의 시행과 관련하여, 회원국 정부의 직접적 또는 실질적인 통제 하에 있는 기관들에 의한 조달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부에 의한 통제라는 요소를 명시적으로 협정 적용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WTO 정부조달협정의 포괄적인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 또한 GATT 체제 하에서 처음 정부조달협정이 도입되는 시점부터 이후 이어진 협상과정에서 거듭 제기되는 또한 암묵적으로 이해되어 오던 바대로, 민영화에 따른 법적 지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조달과 관련된 정부의 영향배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협의 기간의 한정이 요구된다. 일본이 주장한 협의 기간은 한정하는 것이 협의를 효율적으로 진행시키는 데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120일은 충분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회원국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210일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된다.

여섯째, 협의의 대상의 한정이 요구된다. 협의의 대상은 협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수정회원국(Modifying Party)과 수정안에 의한 모든 영향을 받는 회원국(Objecting Party)으로 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만한 분쟁 해결의 노력이 요구된다. GATS에는 분쟁해결에 관련한 조항이 있으나, 새롭게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합의에 의한 중재가 제안되고 있다. 따라서 이해 당사국은 합의에 의한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참고 문헌

- [1] WTO, 정부조달협정문(GPR/Spec/77), 1993. 12. 15.
- [2] WTO, Government Procurement: the Plurilateral Agreement, www.wto.org/
- [3] 김도훈,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업종별 대응책, 경제연구총서, 1998.
- [4] 양준석 · 김홍률,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책연구 01-07). 2001.
- [5] 남상구 외 2, 한국통신의 민영화와 기업가치 극대화 전략 연구, 한국통신경영연구소, 2000.
- [6] 김상택 외 6, 한국통신 민영화 보완대책 및 경영효율화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보고 99-28), 1999.
- [7] 강신원, 민영화와 통신조달협정, 정보통신정책연구 Vol. 9, No. 1, 2002. 6.
- [8] GATT, GPR/SPE/60, para. 60, Dec. 23, 1988.
- [9] GATT, GPR/SPEC/64, Dec. 9, 1991.
- [10] GPA Article XXIV:6(b)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2001.
- [11] 강신원, “통신시장 유효경쟁평가를 위한 지표체계 연구,” 주간기술동향 통권 1076, 2002. 12., pp. 20-21.
- [12] EU,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Packag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russels, 2001.
- [13] BT, BT V. UK Government: Misimplementation of European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Briefing: 18 Sep. 2000.
- [14] EC,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Pursuant

to Article 8 of Directive 93/38/EEC, European Commission, 2000.

[15] 조달청, WTO 정부조달위원회 및 정부조달투명성 작업반 회의결과, 2002. 11.

[16] WTO, Draft Text for Possible Revised Provisions Relating to Basket 3 Issues(ART. XXIV:6), 2003. 4. 22.

[17] WTO GPA Job No. 5669